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성숙 (법무부 등 25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14. ~ 9. 18.)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검찰청”을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은 공소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제2조(「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광주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사기관에”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로,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사기관에”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4조(「가석방자관리규정」의 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조(「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의 개정)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를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4조제1항 전단”을 “법 제40조제1항 전단”으로,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로 한

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의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5조의2”를 “법 제4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제13조제3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각급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2. 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장에 제3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휴직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법 제39조의2”를 “법 제48조”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34조의2”를 “법 제41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5조제4항제4호”를 “법 제42조제4항제4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를 “법 제4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를 “법 제47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각각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4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한다.

제11조의10제3항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

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로 한다.

제7조(「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의 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을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을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제4조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을 “「형

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지사건”을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피해액 1,000만 원 이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횡령
범죄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2호) 중 “지방검찰청등”을 “지방공소청등”으로 한다.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죄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5. 「건축법」 위반 범죄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9. 「주차장법」 위반 범죄
20.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수사”를 “검사의 직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재수사요청”을 “재수사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감찰”을 “점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등”을 “지방공소청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4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등”을 각각 “지방공소청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조(「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을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및 검찰청”을 “검사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
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조언

제2조제8호 중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을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청의 전산통신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을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를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9조(「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의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4호(지문채취 불응)의 범칙행위란 중 “경찰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 중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를 “임용령 제45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27조제3항 단서 중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1의2. 검사가 다른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12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을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

람”으로 한다.

제13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방위사업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호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치안총감”을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를 “「공소청법」 제29조 각 호의 검사”로, “치안정감”을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치안정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치안감·경무관”을 “2급·3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치안감·경무관”으로 한다.

제15조(「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록

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혐의자, 관련자 및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나.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의 경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등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기록
제8조의3제2호 중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으로, “검찰총장·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으로 한다.

제17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의 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중 “검찰 또는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8조(「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으로 한다.

별표 1 중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검찰·마약수사”를 각각 “형사법무”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3 제1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제19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의2. 해당 연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별표 2의2의 별정직공무원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6급 이하
------------	-------

별표 3 제1호의 별정직공무원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6급 이하
------------	-------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을종란 과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며, 같은 란 더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란 어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기소중지자 등에 대한 소재수사·검거”를 “불출석 피고인 등에 대한 소재확인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속영장 집행”으로 한다.

마.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 아목 중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란 카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가목·나목 또는 라목”을 “가목·나목·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6)가)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일반직·별정직”을 “일반직·별정직·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9) 중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으로, “철도경찰직공무원”을 “철도경찰직공무원과 형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9) 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9)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4급 이하의 과학기술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전문경력관
- 마)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의 명을 받아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무,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와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형사법무직 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별표 11 제3호바목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의 해당자	
계급	월 지급액
4급 이상	200,000원
5급 이하 7급 이상	150,000원
8급 이하	100,000원
(2)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4) 마)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별표 13에 제11호란 다음에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4급 이상
---------------	-------

별표 15의 비고 외의 표 부분 중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	----	------------	--	----------

별표 15 비고 제6호 표 외의 부분 중 “치안총감”을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으로 한다.

제20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진행 중”을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검찰사무·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2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검찰”을 “형사법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3호 중 “검찰·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별표 1의 행정직군의 검찰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직군의 마약수사 직렬란을 삭제한다.

형사법무	형사법무		형사법무 사무관	형사법무 주사	형사법무 주사보	형사법무 서기	형사법무 서기보
------	------	--	-------------	------------	-------------	------------	-------------

제23조(「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검찰·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검찰·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검찰”을 각각 “형사법무”로 하고, 같은 호 마약수사 직렬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의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형사법무	형사법무						
------	------	--	--	--	--	--	--

별표 9의 판사·검사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3급 수사관	4급 수사관	5급 수사관	6급 수사관	7급 수사관	8급 수사관	9급 수사관
------------	-----------	-----------	-----------	-----------	-----------	-----------	-----------

별표 12 중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형사법무	형사법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	---	-----------------------

제24조(「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한다.

제25조(「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6조(「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7조(「공증인법 시행령」의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및 중 제1조의3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본문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및 제47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8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을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5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을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7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7호의2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2조제3항제4호 중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광역공소청 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차장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29조(「관세사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지방공소청 소재지”로, “고등검찰청의”를 “광역공소청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30조(「교육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단서 중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거나 공소청에 송치된”으로 한다.

제31조(「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공소청 검사급 이

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32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표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이하 “각급 공소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입 자	수 입 의 한 계
검찰총장	대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광역공소청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과 해당 광역공소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광역공소청 소재지 외의 지방공소청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제3조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각급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급 공소청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산하 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산하 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소속검찰청의 장”을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

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에”를 “공소청에”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로,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5조(「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원장·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국가정보원장,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36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제37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38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검찰기관”을 “공소청·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9조(「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8호 중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공소청의 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0조(「군인사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5제3항제3호 중 “검찰·경찰(군검찰·군사경찰을 포함한다)”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군검찰·군사경찰을 포함한다)”로, “수사 중인 경우”를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제41조(「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수사가 진행 중”을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57조제8호 중 “검찰청의 검사장”을 “공소청의 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2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근로감독관규정」의 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4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 ①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로 한다.

1. 검찰총장
2. 광역공소청장
3. 공소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공소청법」 제13조의 공소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형사사법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공소청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광역공소청 차장검사

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② 「공소청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검사를 말한다.

제45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을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대검찰청의 위치)”를 “(공소청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를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의 명칭과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6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경찰청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7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소청

2의2. 중대범죄수사청

제48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9조(「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의 개정)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을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제4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제50조(「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1조(「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범죄수사를”을 “범죄수사나 공소제기·유지 또는 형의 집행을”로 한다.

제52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사법경찰관 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6
항”을 각각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하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담당자”라 한다)”을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이하 “공소청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공소청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담당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
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3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관세청”을 “공소청·관세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제5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공소청

파. 중대범죄수사청

제2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4조(「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의 개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지방공소청장”으로, “각급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5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을“(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으로,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를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로,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8조(「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

제59조(「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60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
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1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검
찰총장·광역공소청장·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
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을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62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63조(「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의 개정)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회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4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제3호 및 제8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검찰행정”을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행정”을 “검사사무 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 예산”을 “검사사무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사”를 “공소청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업무”를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를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 범죄 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사·교정”을 “검사사무·교정”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65조(「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협의회)”를 “(형사사법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협의회”를 “형사사법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66조(「변호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공소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

공소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공소청 지청
제8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9조제5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7조(「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의 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68조(「병역법 시행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공소청 형사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
앙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를 “지방공소청 차장검사(2
명 이상의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6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

고,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및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한다.

제69조(「보안관찰법 시행령」의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거지 관할검사”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제70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1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72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검찰사무직”을 각각 “형사법무직”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73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을 “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7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중 “진행 중”을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75조(「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호 단서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 또는 경찰”로 한다.

제76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4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7조(「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차장”으로 한다.

제78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다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제79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0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1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4호 중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지방공소청 소재지”로, “고등검찰청의”를 “광역공소청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82조(「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3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치장

별표 4 제1호라목1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치장

제84조(「수형자 등 호송 규정」의 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관 또는 「공소청법」 제55조·「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사건소관 공소청”으로 한다.

제85조(「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호 중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6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7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를 “(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사절차”를 “수사절차(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를 “조사(「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질신문”을 “대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사”를 “수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사”를 “수사 등에 관한”로 한다.

제88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9조(「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의 개정) 안

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소청

나. 중대범죄수사청

제90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소청

4의2. 중대범죄수사청

제91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92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 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를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26조의3제4항 단서 중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

제93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을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종료한 때”를 “종료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제9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7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7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협의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검찰총장에게”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로, “검찰총장이”를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379조의2제4항 중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로 한다.

제3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제1호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협의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으로 하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

문 중 “검찰총장에게”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이”를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95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또는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를 준용한다.

제96조(「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진행 중”을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전문 직군의 검찰전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직군의 마약수사전문란을 삭제한다.

형사법무전문	형사법무
--------	------

형사법무 전문관	형사법무 부전문관
-------------	--------------

제97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단서 중 “검찰에”를 “검사에게”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98조(「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의 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소청

다. 중대범죄수사청

제5조제4호나목 중 “검찰정보”를 “검사사무 정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소청(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할 검찰기관의 장”을 각각 “관할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99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60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제100조(「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01조(「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6596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으로 한다.

제5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

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관리·검색·회보·삭제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제10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을 “공소청·병무청·방위사업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으로 한다.

제103조(「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제104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05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록

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혐의자, 관련자 및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나.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의 경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등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기록
제14조의2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의4제2호 중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으로, “법 제73조제3항”을 “법 제73조제4항”으로, “검찰총장·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으로 한다.

제10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7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 중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을 “8명[서기관(형사법무직렬 5급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형사법무사무관 2명, 형사법무주사 3명, 형사법무주사보 2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검찰사무관”을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제108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4 중 “수사기관의 장”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

청 지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10조(「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1조(「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제112조(「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개정)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3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을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2제1호 중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4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수사기관의 통보등)”을 “(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115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의 개정)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을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가 공판정”을 “검사가 공판정”으로, “재판장 또는판사”를 “재판장 또는 판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를 “대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을 “해당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을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6조(「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을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

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한 검찰청”을 “소속된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118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1호 내지 4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7급·8급·9급

제119조(「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0조(「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검찰기관”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1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2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6명”을 “7명”으로 한다.

제123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수사를”을 “수사나 검토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로 한다.

제124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검찰청·사법경찰관서”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사법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검찰청, 그 지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5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7조 중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제13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6조(「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의 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

우”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연임 등에 관한 적용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제42조의 검사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 통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

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2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및 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및 형사법무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광역공소청	서 울 특 별 시
대전광역공소청	대 전 광 역 시
대구광역공소청	대 구 광 역 시
부산광역공소청	부 산 광 역 시
광주광역공소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원광역공소청	수 원 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 울 특 별 시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 울 특 별 시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 울 특 별 시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 울 특 별 시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서 울 특 별 시
의정부지방공소청	의 정 부 시
인천지방공소청	인 천 광 역 시
수원지방공소청	수 원 시
춘천지방공소청	춘 천 시
대전지방공소청	대 전 광 역 시
청주지방공소청	청 주 시
대구지방공소청	대 구 광 역 시
부산지방공소청	부 산 광 역 시
울산지방공소청	울 산 광 역 시
창원지방공소청	창 원 시
광주지방공소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주지방공소청	전 주 시
제주지방공소청	제 주 시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고 양 시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남 양 주 시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부 천 시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성	남	시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여	주	시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평	택	시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안	산	시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안	양	시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강	릉	시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원	주	시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	속	초	시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	영	월	읍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홍	성	읍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	공	주	시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	논	산	시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	서	산	시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천	안	시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충	주	시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시청	제	천	시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	영	동	읍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대	구	광역시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	안	동	시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경	주	시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포	항	시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김	천	시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	상	주	시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	의	성	읍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	영	덕	읍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	산	광역시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	산	광역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창	원	시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진	주	시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통	영	시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	밀	양	시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거	창	읍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목	포	시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	장	흥	읍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순	천	시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해	남	읍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군	산	시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정	읍	시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	남	원	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	-----
산처,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	-----
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u>3명(검</u>	----- 3명(형
<u>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u>	<u>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u>
<u>검찰청, 3명(경감 1명, 경위 2</u>	<u>보 1명)은 공소청</u> -----
<u>명)은 경찰청, 3명(소방경 1명,</u>	-----
<u>소방위 2명)은 소방청 소속 공</u>	-----
<u>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u>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장, <u>광주지방검찰청</u> <u>검사장</u>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1. ----- ----- <u>광주지방공소청장</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생략)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검찰총장</u> 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② ----- ----- ----- ----- ----- ----- ----- ----- --- <u>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u> ----- ----- ----- -----.
1. 금융위원회가 <u>수사기관</u> 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u>검찰총장</u> 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1. ----- <u>중대범죄수사청장</u> 에게 ----- <u>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u> ---
2. 금융위원회가 <u>수사기관</u> 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2. ----- <u>중대범죄수사청장</u> 에게 ----- ----- -----.

다만, <u>검찰총장</u>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 · 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③·④ (생략)	----- <u>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 수사청장</u>----- ----- ----- -----. 가.·나.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u>검찰청 검사장</u>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① -- ----- ----- ----- ----- <u>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u>공소청의 장</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 ①·② (생략)	제7조(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u>지방검찰청의 장</u>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이하 “석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	③ ----- ----- --- <u>지방공소청장</u> ----- ----- ----- -----

다.

제1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각 지방검찰청의 장, 경찰서의 장 및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

제1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

-- 지방공소청장 -----

-----.

제18조(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 지방공소청장-----

-----.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① ---

----- 지방공소청장 -----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	---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 <u>검찰청법</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공소청법」</u> ----- ----- -----.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 <u>검찰청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 <u>공소청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 ----- ----- -----.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u>검찰인사위원회</u> (이하 “ <u>검찰인사위원회</u>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 ----- <u>법 제40조제1항 전단</u> ----- ----- ----- <u>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u> (이하 “ <u>검사인사위원회</u> ”라 한다)----- -----.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생략)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 대상자가 판사·재판연구원·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

 지방공소청의 지방공소
청장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
-----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

제12조(검사의 전보) -----

--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
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
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 ---.

1. <u>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u> 2. ~ 5. (생략) 제13조(필수보직기간) ① <u>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1. <u>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u> 1년 2. <u>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u> 2년	1. <u>법 제43조</u>-----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필수보직기간) ① ----- 1. <u>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u> 1년 2. <u>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u>
--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u>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u> 2. <u>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u> 3. 4. (생략)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u>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u> 6. (생략)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u>검찰인사위원회의</u> 심의를 거친 경우 제14조(<u>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u>) 「<u>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u>	<u>이하 같다</u>]: 2년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u>공소청 또는 각급 공소청</u> ----- 2. <u>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u> 3. 4. (현행과 같음) 5. ----- ----- <u>공소청</u> ----- ----- 6. (현행과 같음) 7. ----- <u>검사인사위원회</u> ----- --- 제14조(<u>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u>) 「<u>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u>」 제2조
--	--

규정」 제2조제13호의 직위에 1
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
용할 수 있다.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승진
· 전보·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
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
검찰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항제11호-----

-----.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

-----.

각급 공소청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
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② (현행과 같음)

제3절의2 휴직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u>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u>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법 제39조의2</u>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u>검찰인사위원회</u>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u>검찰인사위원회</u>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 ----- ----- <u>법 제48조</u>----- ----- ----- -- <u>검사인사위원회</u>----- -----. ② <u>검사인사위원회</u>----- ----- ----- -----.

1. ~ 4.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20조(기능) 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3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생략)

제25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舉)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1. ~ 4. (현행과 같음)

③ -----
검사인사위원회-----

--.

제20조(기능) 법 제41조-----

-----.

제23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검사인사업무-----
문-----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천거절차 등) ① -----
-----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4장 검찰인사위원회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3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검사인사위원회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사인사위원회----- 검사인사위원회----- 검사인사위원회-----
-----.

② 검사인사위원회-----

----- 검사인사위원회-----
-----.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검사인사위원회-----

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3조(회의)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

----- 검사인사위원회-----
-----.

1. 법 제42조제4항제3호-----
----- 검사인사위원회-----

2. 법 제42조제4항제4호-----
----- 검사인사위원회-----

② 검사인사위원회-----

--.

제33조(회의) ① 검사인사위원회-----

---- 검사인사위원회-----
-----.

② 검사인사위원회-----
-----.

③ 검사인사위원회-----

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34조(간사) ① 검찰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찰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회의록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36조(사건평가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

----- 검사인사위원회-----

----- 검사인사위원회

----- . --- 법 제

42조제4항제3호-----

----- 검사인사

위원회-----

-----.

제34조(간사) ① 검사인사위원회

-----.

② ----- 검사인사업무

---.

③ ----- 검사인사위원회-----

----- 검사인사위원

회-----.

제35조(회의록) ① -----

----- 검사인사위원회---

-----.

② ----- 검사인사위원회

---.

제36조(사건평가심의) ① 법 제42

조제4항제3호-----

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심의사항 보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② -----
---- 각급 공소청-----
-----.

③ 검사인사위원회-----

-----.

제37조(심의사항 보고) 검사인사위원회----- 검사인사위원회-----

-----.

제3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검사인사위원회-----

-----.

② ----- 검사인사위원회-----

-----.

제3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위원의 자격)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제39조(운영세칙) -----
----- 검사인사위원회-----

-----.

제40조(위원의 자격) ① 법 제47조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47조제2항제2호-----

-----.

③ -----
법 제47조제2항제3호-----

-----.

④ -----
법 제47조제2항제5호-----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
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
다.

⑤ (생 략)

제44조(간사 등) ① (생 략)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
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
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생 략)

제45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
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
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
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
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46조(회의) ① (생 략)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검사인사업
무-----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

----- 법 제47조제1항-----

-----.

② 법 제47조제1항-----

-----.

제4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47조제4항-----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제47조(조사 및 심의) ①·② (생략)

③ 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조사 및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47조 제5항-----

-----.
-----.

④ -----

----- 법 제47조제4항-----
-----.

⑤ (현행과 같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정근수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u>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u> 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u>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u> 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정근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u> ----- -----.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검사나 <u>검찰공무원</u>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u>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⑤ (생략)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u>검찰청법</u>」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u>검찰청법</u>」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생략)	<u>소청 지청을 포함한다</u>) 공무원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u>공소청법</u>」 제46조제1항에 따라 「<u>국가공무원법</u>」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u>공소청법</u>」 제46조제2항에 따라 「<u>국가공무원법</u>」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 ---. -----. ② 「<u>공소청법</u>」 제46조제2항에 따라 「<u>국가공무원법</u>」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 ----- -----. ③ (현행과 같음)
---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 <u>검찰청법</u> 」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소청법</u> 」 제38조제3항----- -----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 <u>검찰청법</u> 」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u>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u>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u>공소청법</u> 」 제38조제1항----- -- <u>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u> ----- ----- ----- --.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자격) ----- ----- ----- ----- ----- ----- -----.
1. <u>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u>	1. <u>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u>

<u>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u>	<u>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u>
2. <u>검찰사무직렬·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u>	2. <u>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u>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u>지방검찰청 또는 지청</u>(이하 “<u>지방검찰청등</u>”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제4조(근무 부서) ----- ----- ----- <u>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u>(이하 “<u>지방공소청등</u>”이라 한다)----- -----.
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u>사건등</u>”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1. (생략) 2. 「<u>형사소송법</u>」 제245조의5 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제5조(직무 범위)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형사소송법</u>」 제245조의5 제1항제2호 전단-----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 치 사건 기록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 련된 <u>인지사건</u>	4. ----- --- <u>진정(陳情)사건 및 민원</u>
5.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 련된 <u>진정(陳情)사건 및 내사</u> <u>(內査)사건</u>	<u><삭 제></u>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② ----- -----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피해액 1,000만 원 이하의</u> <u>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u> <u>횡령 범죄</u>
2. ~ 11. (생 략) <u><신 설></u>	2.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u> <u>위반 범죄</u>
<u><신 설></u>	<u>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u>위반 범죄</u>
<u><신 설></u>	<u>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u>위반 범죄</u>
<u><신 설></u>	<u>15. 「건축법」 위반 범죄</u>
<u><신 설></u>	<u>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2. 그 밖에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등의 범죄

③ (생략)

④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생략)

4.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5. 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에 대한 감찰

6. (생략)

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9. 「주차장법」 위반 범죄

20.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21. ----- 지방공소청등-----

③ (현행과 같음)

④ ----- 검사의 직무

-----.

<삭 제>

<삭 제>

1. (현행 제3호와 같음)

2. -----

----- 재수사요구-----

3. -----

-- 점검

4. (현행 제6호와 같음)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생략)

3.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건등을 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⑦ (생략)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⑤ -----

----- 지방공소청등 -----
-----.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2. -----
----- 제4항 각 호의 -----

⑥ -----

----- 지방공소청등 -----
----- 지방공소청등 -----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u>대검찰청</u>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① ----- ----- <u>공소청</u>----- -----. ② (현행과 같음)
--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이 영은 <u>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u>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u>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u>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 <u>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u> ----- ----- ----- ----- ----- --.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u>검사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
· 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
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
휘

3. ~ 7. (생략)

8.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
산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9. 검사, 검찰청 소속 직원의 임
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
증명 신청·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
의 조회, 검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임용 등 인사 관
련 사무

10.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
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
른 영장 청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
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
경찰관리에 대한 지도·조언

3. ~ 7. (현행과 같음)

8.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
청의 전산통신시스템 -----

9. ----- 공소청 -----

----- 공소청 공무원 -----

10.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

11.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
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제4조(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 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 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에 임용해야 한다.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소속 장관별로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u>임용령 제45조 제3항제4호</u>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 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 하게 하는 경우	7. ----- ----- <u>임용령 제45조 제4항제4호</u> ----- ----- ----- ----- ----- -----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 간의 계산) ① · ② (생략)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 간의 계산)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 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	③ ----- ----- -----

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 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 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u>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 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 외한다.</u> ④ · ⑤ (생 략)	----- ----- ----- -----. ----- ----- ----- 임용령 제31조 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수사처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u>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u> <u><신 설></u>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 ----- ----- ----- ----- ----- ----- ----- ----- ----- ----- ----- 1. <u>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u> <u>1의2. 검사가 다른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u>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 ----- ----- ----- ----- ----- ----- ----- ----- ----- ----- ----- ----- -----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 <u>「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u> ----- ----- -----
4. ~ 7.(생략)	4. ~ 7.(현행과 같음)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 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 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 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 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 리) <u>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u> ----- ----- ----- ----- ----- ----- ----- ----- -----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해군·공군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u>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 -- ----- ----- ----- ----- <u>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방위사업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① ----- ----- ----- ----- ----- ----- ----- ----- -----.

1.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감사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u>경찰청장</u>,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2. ~ 4. (생략) ② (생략)	1. ----- ----- ----- <u>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u> -----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u>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u>)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제8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 ----- ----- ----- ----- --- <u>광역시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u> ----- ----- ----- ----- ----- -----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생략)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u>	2. <u>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록</u> 가. <u>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혐의자, 관련자 및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u> 나. <u>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의 경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및 공소장 등 공</u>

	<u>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u> <u>소 유지와 관련된 기록</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조사·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8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8조의3(조사·수사 자료의 범위)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u> 의 수사 자료: 수사개시통보 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 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 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협 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u>검찰총장·경찰청장, 그 밖의</u> <u>수사기관의 장과</u> 협의하여 정 하는 자료	2.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경</u> <u>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u> <u>자료 등</u> ----- ----- ----- ----- <u>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u> <u>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u> <u>관의 장</u> -----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 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 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 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u>감사원</u> 과 <u>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u>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 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 ----- ----- ----- <u>감사원</u> <u>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u>

<u>기관의 장</u>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 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 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 ③ (생 략)	<u>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 관 등의 장</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및 조사) ① ~ ⑥ (생략)	제15조(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및 조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u>검찰 또는 수사기관</u> 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 ----- ----- ----- <u>수사기관</u> ----- -----.
⑧ · ⑨ (생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 ----- ----- -----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4. ~ 6. (생략)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생략)

② ~ ⑤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해당 연도 중 「중대범죄 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에 따라 직권면직된 사람

4. ~ 6. (현행과 같음)

7.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③ (생략)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u>진행 중</u> 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④ ----- ----- ----- ----- ----- ----- ----- <u>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u> ----- -----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⑦ -----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u>검찰청</u>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u>검찰청</u>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⑧ · ⑨ (생략)	----- ----- ----- ----- -----. 1. ----- ----- ----- ----- <u>공소</u> <u>청</u>----- --- 2. ----- ----- ----- <u>공소청</u>----- ----- --- ⑧ · ⑨ (현행과 같음)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4. ----- ----- ----- ----- -----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보호· <u>검찰사무·마약수사</u> ·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직렬의 공무원	가. ----- ----- -- <u>형사법무</u> ----- ----- -----
나. 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u>검찰총장 또는 검사장</u> 의 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나. ----- --- <u>지방공소청장</u> ----- ----- ----- -----
다.·라. (생략)	다.·라. (현행과 같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 용) ① (생 략)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 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u>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u> 에 관한 분야 6. ~ 8. (생 략)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 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형사법무</u> ----- ----- 6. ~ 8. (현행과 같음)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생 략)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 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u>고 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u> 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 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 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광 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u> --- ----- ----- -----

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 ⑨ (생략)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② (생략)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교정 · 보호 · 검찰 · 마약수사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6. (생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형사법무-----

4. ~ 6.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⑬ (생 략)	⑤ ~ ⑬ (현행과 같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		-----		
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		-----		
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		-----		
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		-----		
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		-----		
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		-----		
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		-----		
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		-----		
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		
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		
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교정·보호· <u>검찰·마약수사</u>			2. ----- <u>형사법무</u> -----	
·출입국관리·행정·세무·			-----	
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			-----	

(일반기계·전기·화공 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교정·보호·<u>검찰·마약수사</u>·출입국관리·철도경찰·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통계·감사·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삭제 ⑤·⑥ (생략)	----- ----- ----- ----- ----- -----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형사</u> <u>법무</u>----- ----- ----- -----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	---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협회의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회의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협회의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 <u>검찰사무</u> ·출입국관리·유선교환 등 기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5. ----- ----- ----- <u>검사사무</u> -----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발급 업무 수행) ① (생략)	제3조(발급 업무 수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② ----- ----- ----- -----.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u>검찰청</u>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1. ----- <u>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u>각급 검찰청</u>	2.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	②----- ----- ----- ----- ----. ----- ----- ----- ----- ----- -----

다.	--.
1. 법원· <u>검찰청</u>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1. ----- <u>공소청</u> ----- -----
2. 법원· <u>검찰청</u>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 <u>공소청</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 ④ (생략)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u>지방검찰청 검사장</u> 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지방공소청장</u> ----- ----- -----.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 ④ (생략)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u>지방검찰청 검사장</u> 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지방공소청장</u> ----- ----- -----.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u>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u> 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소속 지방공소청장</u> ----- ----- -----.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 (생략)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 (현행과 같음)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성명·주소의 변경, 면직·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②-----

----- 소속 지방공소청장-----.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

----- 소속 지방공소청장-----.

-----.

제29조(성명·주소의 변경, 면직·사망의 신고) ①-----

----- 소속 지방공소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
----- 소속 지방공소청장-----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
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
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
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
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
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

-----.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공소청장

-----.

1. · 2. (현행과 같음)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
공소청장-----

-----.
-----.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

----- 소속 지방공소청장-----

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생략)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 지방공소청장-----

-----.

③ -----

----- 지방공소청장-----

-----.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공소청장-----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공소청장-----

다.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u>지방검찰청검사장</u>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3. (생 략) ③ ~ ⑤ (생 략)	--.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방공소청장</u>----- ----- ----- -----. 1. ~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⑤ (생략)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⑥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 범죄수사청수사관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9.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 ----- <u>공소청</u> ----- ----- <u>형사법</u> 무직 공무원
9의2. ~ 20. (생략)	9의2. ~ 20. (현행과 같음)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① ----- ----- ----- ----- -----

한다.

1. ~ 7. (생략)

<신설>

8. ~ 10. (생략)

11.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2. ~ 26.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
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
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
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
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
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생략)

<신설>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

범죄수사청수사관

8. ~ 10. (현행과 같음)

11. ----- 공소청 -----

----- 형사법

무직 공무원

12. ~ 26.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7호의2에 해당하는 6

2. · 3. (생략) ③ (생략)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략) 4. <u>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u>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생략) <u><신설></u> 6. ~ 9. (생략)	<u>급 및 7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u>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광역공소청 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차장검사</u> ----- ----- --- 5. (현행과 같음) <u>5의2.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u> 6. ~ 9. (현행과 같음)
--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수입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생략)	제21조의3(수입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검찰청법</u> 」 제3조에 따른 <u>대검찰청</u> , <u>고등검찰청</u> , <u>지방검</u> <u>찰청</u> , <u>지방검찰청 지청</u> 및 같 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 할구역의 <u>지방검찰청 소재지</u> 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u>고등검</u> <u>찰청의 지부</u>	4. 「 <u>공소청법</u> 」 제3조에 따른 <u>공소청</u> , <u>광역공소청</u> , <u>지방공소</u> <u>청</u> , <u>지방공소청 지청</u> ----- ----- ----- <u>지방공소청 소재지</u> ----- <u>광역공</u> <u>소청의</u>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신설>	6의2. 「 <u>중대범죄수사청 조직</u> <u>및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3조 에 따른 <u>중대범죄수사청</u> 및 <u>지방중대범죄수사청</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교 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 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 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 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 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 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 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 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 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 ----- ----- ----- ----- ----- ----- ----- ----- ----- ----- ----- ----- ----- ----- 1. ~ 7. (생략) 8. 징계등 사유가 「국가공무원 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서 수사하거나 공소청에 송치
된 -----

② ~ ⑧ (현행과 같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① ----- ----- ----- ----- -----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

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 (생략)

<신설>

4. ~ 7. (생략)

② (생략)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생략)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 6. (생략)

-----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3. (현행과 같음)

3의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4. ~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검찰청</u>,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검찰청</u>,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u>----- -----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u>----- ----- ----- -----. ⑤ (현행과 같음)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제19조(공가)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u>검찰</u> ,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 <u>공소청</u> ----- -----
3. ~ 14. (생략)	3. ~ 14.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u>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u> 에게 위임한다.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 ----- ----- ----- ----- <u>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이하 “각급 공소청장”이라 한다)</u> ----- -----.		
수 입 자	수 입 의 한 계	수 입 자	수 입 의 한 계	
검찰총장	대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검찰총장	대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고등검찰청 검사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과 해당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광역 공소청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과 해당 광역공소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고등검찰청 소재지 외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광역공소청 소재지 외의 지방공소청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		

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송물가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

급 공소청장-----

-----.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①각급 공소청장-----

-----.

②각급 공소청장-----

여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
정할 때에는 소속검사(지방검찰
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의 검
사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검찰
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
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다)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
다.

②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
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급검찰
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
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
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
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
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
각급 공소청장은 검사 또는 공
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할 때에는 소속 검사(지방공소
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의 검
사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공소
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
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다)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광역공소청장---

----- 산하 지방
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산하 지
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
관-----.

③----- 각급 공소청장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관계 행정청과의 협조) 국가 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②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

-----.

제9조(관계 행정청과의 협조) ---

----- 소속 공소청의 장 -----

-----.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① -----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

-----.

② -----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

----- 공소청에 -----

-----.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① ----
---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

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

소청장-----

-----.

②-----

-----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

③-----

-----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

-----.

1. -----

--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

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생략) ②·③ (생략) 제14조(소송수행해태) ① (생략) ② <u>각급 검찰청의 장</u>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① (생략) ② <u>각급 검찰청의 장</u>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이 영 제2조에 따라 <u>각급 검찰청의 장</u>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국가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 ----- ----- -----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소송수행해태)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급 공소청장</u>-----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급 공소청장</u>----- ----- ----- <u>각급 공소청장</u>----- ----- ----- ----- -----.
--	--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지구심의회 설치와 관할)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u>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u> , 그 외의 지역에는 <u>지방법검찰청에</u>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u>고등검찰청 또는 지방법검찰청 소재지</u> <u>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u> 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 ② ~ ④ (생략)	제8조(지구심의회 설치와 관할) ①----- -- <u>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u> ----- <u>지방법공소청에</u> ----- ----- <u>광역공소청 또는 지방법공소청</u> -- ----- ----- ----- -----.
제9조(지구심의회 구성 등) ①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u>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법검찰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u> , 그 소속공무원·법관·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제9조(지구심의회 구성 등) ①----- <u>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법공소청</u> ----- ----- ----- ----- ----- ----- -----.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생략)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u>각급 검찰청의 검사</u>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지급기관) ①·② (생략) ③심의회에서 결정한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국가 배상금은 법무부 세출 예산으로 본부심의회 소속 각 지구심의회 해당 <u>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u>이 지급한다. ④ (생략)	제22조(지급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u>-----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u>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u>----- ----- ----- -----. ③ (현행과 같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① <u>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u>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이하 “범인”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 하여 신고자등이 부상 또는 사 망하거나, 범인을 살해하거나, 범인을 자살하게 한 것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관할 <u>지방검찰청</u> <u>검사장이나 지청장</u> 또는 국방부 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 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① <u>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서장·</u> <u>해양경찰서장</u> ----- ----- ----- ----- ----- ----- <u>지방공소청</u> <u>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u> ---- ----- -----.
② <u>국가정보원장·지방검찰청</u> <u>검사장이나 지청장</u> 또는 국방부 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은 제1항의 보고나 타인의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직권으로 국가정 보원직원·검사 또는 군검사로 하여금 그 사건을 조사하고, 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 의 지급대상이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등의 해당	② <u>국가정보원장, 지방공소청장</u> <u>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u> ----- ----- ----- ----- ----- ----- ----- ----- ----- ----- -----

여부를 조사한 후 공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u>법무부 검찰국장</u> 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 소속 검사와 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⑤ (생략)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무부 형사사법국장</u>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침해조사국) ①·② (생략)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u>검찰·경찰</u>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 8. (생략) ④ ~ ⑧ (생략)	제9조(침해조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경찰</u> ----- ----- ----- ----- ----- 3. ~ 8.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① (생략)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무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u>검찰청</u>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 ----- ----- ----- <u>공소청</u> ----- ----- -----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제29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략)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u>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u>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거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군검사는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범인을 체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과 같음) ② ----- ----- ----- ----- <u>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u>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법무관리관) ① (생 략)	제8조(법무관리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②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일반 사법기관 및 <u>검찰기관</u> 과의 협조	3. ----- <u>공소청 ·</u> <u>수사기관</u> -----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① 국방부장관(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①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소관 <u>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u>	8. ----- <u>공소청의 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u>
9. ~ 16. (생략)	9. ~ 16. (현행과 같음)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감사원, <u>검찰·경찰(군검찰·군사경찰을 포함한다)</u> ,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타 국가기관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조사 또는 <u>수사 중인 경우</u> 4.·5. (생략) ④ ~ ⑦ (생략)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2. (현행과 같음) 3. ----- <u>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군검찰·군사경찰을 포함한다)</u> ----- ----- ----- ----- -- <u>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u> 4.·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② (생략)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u>수사가 진행 중</u> 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③ ----- ----- ----- ----- ----- -----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 ----- ----- ----- ----- ----- -----.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u>검찰</u> <u>청</u>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 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 또는 관할 <u>검찰청</u>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 명서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 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 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기관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7. (생략)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 소관 <u>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u> 9. ~ 15. (생략)	1. ----- ----- ----- ----- <u>공소</u> <u>청</u>----- --- 2. ----- ----- ----- <u>공소청</u>----- ----- ---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 위 등)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공소청의 장 또는 지방공소청</u> <u>지청장</u> 9. ~ 15. (현행과 같음)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공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 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 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공가) ① ----- ----- ----- -----. -----.
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u>검찰</u> ,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1. ----- <u>공소청</u> -----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① -----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			
우수한 사람을 근로개선지도 및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	-----			
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	-----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	-----			
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 에게	----- <u>지방공소청장</u> -----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	-----			
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	-----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② -----			
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	-----			
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	-----			
할하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 에게	----- <u>지방공소청장</u> -----			
반납하여야 한다.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	<u>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 ①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로 한다. 1. 검찰총장 2. 광역공소청장 3. 공소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공소청법」 제13조의 공소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형사사법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

<u>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u> <u>7. 지방검찰청 검사장</u> <u>8. 사법연수원 부원장</u> <u>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u> <u>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u> <u>11. · 12. 삭 제</u> <u>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u>	<u>인정책본부장</u> <u>7. 지방공소청장</u> <u>8. 사법연수원 부원장</u> <u>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u> <u>10. 광역공소청 차장검사</u> <u>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u> <u>② 「공소청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검사를 말한다.</u>
---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이 영은 「<u>검찰청법</u>」 제3조제3항에 따라 <u>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u>대검찰청의 위치</u>) <u>대검찰청</u>은 수도에 둔다. 제3조(<u>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u>) <u>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u>	<u>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 「<u>공소청법</u>」 제3조제3항에 따라 <u>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u> -----. 제2조(<u>공소청의 위치</u>) <u>공소청---</u> -----. 제3조(<u>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의 명칭과 위치</u>) <u>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u>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② ~ ⑦ (생략)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u>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생 략) 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생 략) 2. <u>검찰청</u> <u><신 설></u> 3. ~ 5. (생 략)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2. <u>공소청</u> <u>2의2. 중대범죄수사청</u> 3. ~ 5. (현행과 같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2. (생략) 3.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 ~ 바. (생략) 4. (생략) ②·③ (생략)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가. ----- <u>공소청</u> ----- ----- 나. ~ 바.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u>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u> , <u>경찰청 경비국장</u> ,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 ----- ----- ----- ----- ----- ----- ----- ----- <u>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청 경비국장</u> ----- ----- ----- ----- ----- ----- ----- ----- ----- ----- ----- -----.
제4조(책임) ① (생략) 1. ~ 9. (생략) 10. <u>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u>	제4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u>공소청 공공안전부장</u>

가. (생 략) <u>나.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u> <u>휘 총괄</u> 다. ~ 마. (생 략) <u><신 설></u> 11. ~ 16.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다. ~ 마. (현행과 같음) <u>10의2.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u> <u>수사국장</u> <u>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u> <u>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u> <u>나.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u> <u>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u> <u>사의 지원</u> 11. ~ 16. (현행과 같음)
--	--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감찰반) ① ~ ③ (생략)	제7조(감찰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 하고, 반원은 감사원· <u>검찰청</u> · 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 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으로 한다.	④ ----- ----- ----- <u>공소청</u> · <u>중대범죄수사청</u>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 -----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 범죄수사나 공소제기·유지 또는 형의 집행을 -----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디엔에이인적관리자) ① (생략) ②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삭제하기 위하여 <u>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u> 중에서 인적관리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조(디엔에이인적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법경찰관 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u> ----- ----- ----.
제7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① (생략) ②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 <u>법 제8조제6항</u> 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	제7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법 제8조제7항</u> ----- ----- ----- ----- ----- ----- -----.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	③ -----

시료를 채취한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수용기관 소속의 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략)

제10조(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
식시료의 송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5조 또는 제
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
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찰
총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
리자(이하 “검찰 디엔에이인적
관리자”라 한다) 또는 제4조제1
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경

. 법 제8조제7항

1. · 2.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
식시료의 송부) ① -----

-----공소청-----

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
다)에게 보내야 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건네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 용기 등에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등과 식별코드를 입력한 후 지체 없이 그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하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담당자는 검사가 법 제6조에 따
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
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

1. · 2. (현행과 같음)

(2) -----

---- 공소청 법과학기 획관(이
하 “공소청 디엔에이신원 확인
정보담당자”라 한다) -----

③ 공소청 -----

시료에서 취득한 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경찰 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1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에이감식시료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검찰 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2. (생략)

② 검찰 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군 디에이감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네받은 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에이신원확인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지체 없이 경찰 디에이신원확인정보

-----.

제11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① -----

-----.

1. -----

----- 공소청 -----

2. (현행과 같음)

② 공소청 -----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검찰총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u>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u>에게 위임한다. ② (생 략)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① <u>검찰</u>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 당자(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담당자”라 한다) 및 군 디 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 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 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의 사 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디 엔에이감식을 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 은 사람은 <u>검찰</u> 디엔에이인적관	-----.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 ----- <u>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u> <u>당자</u>-----.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① <u>공소</u> <u>청</u>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공소청</u> -----
--	--

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와 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통보

2.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에게 법 제13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이 검찰 디엔에이인적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① -----

-----.

1. -----

----- 공소청 -----

2. -----

----- 공소청 -----

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 관리자에게 통보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검색 결과 디 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 여야 하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 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인 적사항등 및 식별코드를 삭제한 후 <u>검찰</u>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담당자에게 삭제한 식 별코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9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 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 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지식이 풍부한 <u>대검찰청</u>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각 1명씩을 임명한다. ⑥·⑦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공소청</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 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 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공소청</u> ----- ----- -----. ⑥·⑦ (현행과 같음)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u>대검찰청·관세청</u>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략) ④ ~ ⑦ (생략)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 ----- ----- <u>공소청·관세청·중대범죄수사청</u> ----- ----- ----- -----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삭제 2. ~ 13. (생략)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 ----- ----- ----- ----- -----. 2.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 15. (생 략)

② (생 략)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가. 삭제

나. ~ 카. (생 략)

타. 대검찰청

<신 설>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14.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

-----.

1. -----

나. ~ 카. (현행과 같음)

타. 공소청

파. 중대범죄수사청

<u>과</u>. ~ <u>거</u>. (생 략)	<u>하</u>. ~ <u>너</u>. (현행 과목부터 거 목까지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 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u>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u> <u>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u> <u>다)</u>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 ----- ----- ----- ---- <u>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u> <u>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u> <u>에서 같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관할 <u>지방검찰청 검사장</u>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u>지방공소청장</u>----- ----- ----- -----.

몰수금품등처리에 관한임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 총장 · <u>고등검찰청</u> 검사장 · <u>지 방검찰청</u>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 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 <u>각 급 검사장</u> ”이라 한다)은 법 제2 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 --- <u>광역공소청장 · 지방공소청 장</u> ----- ----- <u>각 급 공소청장</u> -----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u>검사</u> 2. (생략) 3. 「 <u>검찰청법</u> 」 제47조에 따라 <u>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u> <u>하는 사람</u> 4. 5. (생략) ② (생략)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 ----- -----. <u><삭 제></u>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u>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u>	제8조(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u>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같은 조 제6항-----</u> ----- ----- -----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범죄경력조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경찰청장이나 <u>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또는 군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8조(범죄경력조회) ① ----- ----- ----- ----- ----- <u>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② 경찰청장, <u>지방검찰청 검사장</u> 및 군검찰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국방부	② ----- <u>지방공소청장</u> ----- ----- ----- ----- ----- ----- ----- ----- ----- ----- -----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회 신해야 한다. ③ (생 략)	----- -----. ③ (현행과 같음)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 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략) <u>2. 검찰청</u> 3. ~ 5. (생략) ③ ~ ⑧ (생략)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u>2. 중대범죄수사청</u>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u>지방법원</u> (지방법원지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 ----- ----- ----- <u>지방법원</u> <u>지청</u> (지방법원지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집행기간의 연장)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관할 <u>지방법원</u> 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집행기간의 연장) ① ----- ----- ----- ----- <u>지방법원</u> <u>지청</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포 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u>지방검찰청</u> <u>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u>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 ----- ----- ----- <u>지방공소청</u> <u>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u> <u>다. 이하 같다)</u>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 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 을 접수한 관할 <u>지방검찰청</u> <u>검 사장</u> 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 ----- ----- -----. ----- ----- <u>지방공소청장</u>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관할 <u>지방검찰청</u> <u>검사장</u> 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u>지방공소청장</u> ----- ----- -----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u>지방검 찰청</u> <u>검사장</u> 은 포상금의 지급에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 <u>지방공 소청장</u> -----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

_____.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
---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
청을 포함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

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2. (생략)

③·④ (생략)

제15조(실무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 기획예산처·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략)

⑤·⑥ (생략)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생략)

② 지구심의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를

----- 공
소청차장검사 -----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실무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공소청 -----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공소청장-----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7조(지구심의회 구성) ① 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법원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29조(지구심의회 관할) 지구심의회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사무직원) ① (생략)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지구심의회 구성) ①--

----- 지방법원-----
----- 지방법원
공소청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지구심의회 관할) ----

----- 지방법원-----

-----.

제32조(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법원 소속 -----

천으로 해당 <u>지방검찰청</u> 검사장이 임명한다.	----- <u>지방공소청장</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u>각급 검찰청의 검사</u> 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 ----- <u>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u> ----- -----.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복사 요청) ① (생략)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복사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u>검찰청</u> 에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 <u>공소청</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생략)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	② ----- -----

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명한다.

③·④ (생략)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

---. -----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 -----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
----.

③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

하지 못한다. ④ 관할 <u>지방검찰청 또는 지청</u>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형사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u>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u>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④ --- <u>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u>----- ----- ----- ----- -----. ⑤ ----- ----- <u>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u>-----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생략)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및 <u>대검찰청</u> 소속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 4. (생략) ③·④ (생략)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u>공소청</u> ----- ----- ----- ----- ----- -----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및 <u>검찰청</u> 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임무·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소청·</u> <u>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u> <u>공소청 지청</u> ----- ----- ----- ----- -----.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u>검찰청</u> 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 2. 그 밖에 법무부· <u>검찰청</u> 소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u>공소청</u> <u>(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u> <u>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u> <u>이하 같다)</u> ----- -- 2. ----- <u>공소청</u> --

속공무원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
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위원은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
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
·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
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
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소청-----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된 위원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
었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
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u>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u>	<u>②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u>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인정책본부를 둔다.

② (생략)

제4조의3(감찰관) ① (생략)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생략)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 7. (생략)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 10. (생략)

제10조(검찰국) ①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감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공소청-----

3. ----- 공소청-----
--공소청-----

4. ~ 7. (현행과 같음)

8. -----
-----공소청-----

--

9.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형사사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감독

② -----
--.

1.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
2. 검사사무 행정-----

3. 공소청 공무원-----

4. 공소청-----
검사사무 예산-----
5. 공소청사 -----
--
6. 검사사무 -----
--
7. -----

----- 검사사무 -----

8. ----- 검사사무 -----

9.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

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 ----- ----- -----.
---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수사협의회) ① 국방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 간 <u>수사협의회</u> 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형사사법협의회) ① --- <u>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u> ----- ----- ----- ----- <u>형사사법협의회</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①·② (생략)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u>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 ----- ----- <u>중대범죄 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u> -----.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	제7조(사건 이첩) ① ----- ----- -----

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u>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1. <u>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u>의 경우: 각 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u>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u>,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2. (생략)	----- ----- ----- ----- -----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처</u>----- -----. ③ ----- ----- ----- ----- -----. 1. <u>중대범죄수사처, 경찰청</u> --- ----- ----- <u>지방중대범죄수사처</u>----- ----- 2. (현행과 같음)
--	---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 의 범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 만,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 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 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3. 4. (생략) <u><신 설></u> 5.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 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 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 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 청의 지부 3. 4. (현행과 같음) 4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신설>

2. 수사기관

가. (생략)

나. 「검찰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다. ~ 바. (생략)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 ④ (생략)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1의2. 「공소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공소청 지청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다. ~ 바. (현행과 같음)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u>지방검찰청 검사장</u>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면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u>지방검찰청 검사장</u>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u>지방공소청장</u>----- -----.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지방공소청장</u>----- -----. ③ (현행과 같음)
--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④ (생략)	제44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퇴직급여잔여금 또는 퇴직수당잔여금청구서에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 ----- ----- ----- --.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관할 <u>검찰청</u> 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1. ----- ----- ----- <u>공소청</u> ----- ----- --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u>검찰청</u> 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2. ----- ----- <u>공소청</u>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 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 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 ~ 아. (생략) 5. (생략) ② ~ ⑤ (생략)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가. ----- -- <u>공소청</u> ----- ----- 나. ~ 아.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 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 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 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u>대검찰청 형사부장</u> 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법원행정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 원회의 구성) ① ----- ----- ----- ----- ----- ----- ----- -- <u>공소청 형사부장</u> ----- -----

처·외교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3. (생략)

-----.

② -----

-- 지방공소청 차장검사(2명 이상의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

-----.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장이 관할 <u>지방검찰청</u>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5. (생략)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생략)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u>지방검찰청·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u> ③ (생략)	4. ----- <u>지방공소청</u> ----- -- 5. (현행과 같음)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u>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및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한다.</u> ③ (현행과 같음)
--	--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주거지 관할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라 함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라 함은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거지 관할검사”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검찰총장, <u>경찰청장</u> 및 <u>해양경찰청장</u> 을 말한다.	제3조의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u>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허가신청) ① ~ ④ (생략)	제9조(허가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 -----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u>검찰청</u>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1. ----- ----- ----- ----- ----- ----- ----- <u>공소청, 중대범죄 수사청</u> ----- -----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직·교정직· <u>검찰사무직</u>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 ----- <u>형사법무직</u> -----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5급의 교정직·보호직· <u>검찰</u>	4. ----- <u>형사</u>

<u>사무직</u>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u>법무직</u>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구인·긴급구인승인 및 유 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 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u>에 게 구인·긴급구인승인 및 유치 허가의 신청을 한다.	제30조(구인·긴급구인승인 및 유 치허가신청의 관할) ----- ----- <u>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 청</u>----- -----.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 소와 재수용)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 재지를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u>에게 구인을 의 뢰할 수 있다.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 소와 재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지방공소청 또 는 지방공소청 지청</u>-----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 ----- ----- ----- --.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u>검찰청</u>	1. ----- ----- <u>공소청</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u>검찰청</u>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 ----- ----- ----- ----- <u>공소청</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u>검찰청</u>	② ----- ----- ----- <u>공소청</u>

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 4. (생략)

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의신청) ① -----

----- 공소청 -----

-----.

② -----
-- 공소청 -----

-----.

1. ~ 4. (현행과 같음)

③ 각 공소청 -----

-----.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
----- 공소청 -----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u>검찰청</u> 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 <u>공소청</u> ----- -----.
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u>검찰청</u> 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 ----- ----- <u>공소청</u> -----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 <u>검찰청법</u> 」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u>검찰청</u> 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 ----- ----- ----- 「 <u>공소청법</u> 」 제58조----- ----- ----- <u>공소청</u>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③ (생략)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④ ----- ----- ----- ----- ----- ----- ----- ----- ----- ----- <u>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u> ----- -----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⑦ ----- -----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u>검찰청</u>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u>검찰청</u>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⑧ (생략)	----- ----- ----- -----. 1. ----- ----- ----- <u>공소</u> <u>청</u>----- --- 2. ----- ----- ----- <u>공소청</u>----- ----- --- ⑧ (현행과 같음)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u>검찰·경찰</u>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7. ----- ----- ----- ----- ----- ----- -----. ----- <u>공소청</u> <u>또는 경찰</u> ----- ----- ----- -----.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u>대검찰청차장검사</u> , 경찰청차장 2. ~ 4. (생략) ④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 <u>공소청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차장</u> -----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 ----- ----- ----- ----- ----- <u>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지방검찰청검사장</u>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u>지방공소청장</u> ----- ----- ----- ----- -----.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생략)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 <u>지</u> <u>방공소청장</u>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①·② (생략)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출한 소변 등의 시료를 <u>대검찰청</u>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공소청</u> ----- ----- ----- -----.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u> 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 ----- ----- ----- ----- <u>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생략)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검찰청법</u> 」 제3조에 따른 <u>대검찰청</u> , <u>고등검찰청</u> , <u>지방검찰청</u> , <u>지방검찰청 지청</u>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u>지방검찰청 소재지</u> 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u>고등검찰청의 지부</u>	4. 「 <u>공소청법</u> 」 제3조에 따른 <u>공소청</u> , <u>광역공소청</u> , <u>지방공소청</u> , <u>지방공소청 지청</u> ----- ----- ----- <u>지방공소청 소재지</u> ----- <u>광역공소청의</u>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 <u>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3조에 따른 <u>중대범죄수사청</u> 및 <u>지방중대범죄수사청</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제8조의2(공가)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u>검찰</u>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 <u>공소청</u> ----- -----
3. ~ 12.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u>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u> 이 행한다.	제2조(호송공무원)	-----	-----
			-----	-----
			-----	-----
			-----	<u>고위</u>
			-----	<u>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 중대</u>
			-----	<u>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관 또는</u>
			-----	<u>「공소청법」 제55조·「형사소</u>
			-----	<u>송법」 제494조에 따라 직무를</u>
			-----	<u>수행하는 공소청 직원</u> -----.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①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u>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u>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①	--	--
			-----	-----
			-----	-----
			-----	-----
			-----	-----
			-----	<u>지방공소</u>
			-----	<u>청, 사건소관 공소청</u>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직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6. (생 략) 7. 식품등·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 행 및 <u>검찰·경찰 등 수사기 관의 수사</u> 지원에 관한 사항 8. ~ 46. (생 략)	제28조(직무)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u>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 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 사(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 지를 말한다)</u> ----- 8. ~ 46. (현행과 같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설립인가신청) ① ~ ④ (생략)	제10조(설립인가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⑤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발기인 및 임원(법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말한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u>검찰청</u>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	3. ----- ----- ----- ----- -----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u> ----- ----- ----- ----- ----- ----- -----

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 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 기간	----- -----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u>수사기관</u> 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u>수사절차</u> 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 ----- ----- ----- <u>수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u>수사절차(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자에 대한 <u>조사</u> 의 최소화	2. ----- <u>조사(「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3. 피해자와 가해자의 <u>대질신문</u> 최소화	3. ----- <u>대질</u> ----- -----
4. 긴급하지 않은 <u>수사</u> 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4. ----- <u>수사절차</u> ----- -----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	5. -----

죄 <u>수사</u> 전문교육을 받은 인 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생 략)	-- <u>수사 등에 관한</u> ----- ----- 6. (현행과 같음)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략)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사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u>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u>검찰청</u> <신설> 나. ~ 바.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u>공소청</u> 나. <u>중대범죄수사청</u> 다. ~ 사. (현행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략) <u>4. 검찰청</u> <u><신설></u> 5.·6. (생략) ②·③ (생략)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공소청</u> <u>4의2. 중대범죄수사청</u>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u>대검찰청</u> 및 경찰청	1. ----- ----- ----- ----- -----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① ----- ----- -----.
1. <u>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u>	1. <u>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보직기간 등) ① (생략)	제26조(보직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u>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u>	7. ----- <u>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 ③ (생략)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④ ----- ----- ----- ----- -----

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생략)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유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1. 2. (생략)

3. 제33조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

-----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
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수사기관 또는 공
소청-----

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	-----
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 (생략)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u>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u> ③ (생략)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관할 경찰서</u> ----- ----- --.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생략) ② <u>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 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③ <u>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의무소방원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u>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u> ----- ③ <u>감사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u> ----- ----- ---- <u>종료한 때(공소청의 경우</u>

에 의무소방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고발절차 등) ①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의무소방원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u>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에</u>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u>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u>----- ---. 제52조(고발절차 등) ①----- ----- ----- ----- ----- ----- <u>관할 경찰서</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u>수사기관</u> 에 통보할 수 있다.	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 ----- -----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또는 <u>수사기관</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 ----- -----.
1. 법 제4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요청한 <u>수사기관</u> 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1. ----- ----- <u>공소청 또는 수사기관</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	④ -----

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 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 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

-----.

-----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 수사청장-----

-----.

1. -----
----- 중대범죄수사청장-----

-----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

2. -----
----- 중대범죄수사청장-----

-----.
----- 검찰총장 또는 중

· 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⑤ ~ ⑩ (생략)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생략)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대범죄수사청장-----

-----.

가·나 (현행과 같음)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중대

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

⑤ (현행과 같음)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

-----.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
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
에게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
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
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
여도 수사·처분결과를 확인
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
· 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
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② (생략)

----- 검찰총장 또
는 중대범죄수사청장-----

-----.

1. -----
----- 중대범죄수
사청장-----
----- 중대범죄수사청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

2. -----
----- 중대범죄
수사청장-----

-----.
-----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

가.·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생략) ② <u>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u> <u><신 설></u>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법경찰관</u> ----- ----- ----- -----. ③ <u>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또는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를 준용한다.</u>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전직 명령) ①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직공무원을 제5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전직 명령) ① ----- ----- ----- ----- ----- ----- ----- . ----- ----- ----- ----- ---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지위 등을 이용한 비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조사 개시 통보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아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1.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u>진행 중</u> (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u>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u>검찰에</u>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검사에게</u> ----- ----- --.
제23조의7(보석조건 위반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석결정을 한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u>검찰청</u>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23조의7(보석조건 위반 통지) ① ----- ----- ----- ----- ----- -- <u>공소청</u>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① 법률 제9112호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24조(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① ----- -----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생략) 나. <u>검찰청</u> <u><신설></u> 다. ~ 사. (생략)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가. (현행과 같음) 나. <u>공소청</u> <u>다. 중대범죄수사청</u> 라. ~ 아. (현행 다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법무부 가. (생략)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u>검찰</u> <u>정보</u> 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 바. (생략) 5. ~ 13. (생략)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현행과 같음) 나. ----- <u>검사</u> <u>사무 정보</u> ----- 다. ~ 바. (현행과 같음) 5. ~ 13.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 -----

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u>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u>관할 검찰기관의 장</u>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u>관할 검찰기관의 장</u>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u>공소청(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② <u>관할 공소청의 장</u>----- ----- -----. ③ <u>관할 공소청의 장</u>-----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u>수사기관</u> 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관리·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 ----- ----- ----- -----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u> ----- -----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11(숙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 1항에서 “<u>경찰청장·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란 경찰청장, 검찰총 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제60조의11(숙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 1항에서 “<u>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 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 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 장을 말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6조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제출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u>검찰청</u>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 ----- ----- ----- <u>공소청</u> <u>(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u> <u>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u> - ----- ----- ----- ----- -----

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 ---
제7조(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7조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혐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2. (생략)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u>검찰청</u>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7조(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u> ----- ----- ----- ----- -----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6596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96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96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 및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범죄”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로 한다.	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 및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범죄”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로 한다.	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	----- ----- ----- ----- -----.	
1. ~ 3. (생략)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 ----- -----.
4. ~ 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1. ~ 3. (현행과 같음) 4. 「<u>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의 신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관리·검색·회보·삭제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8. ----- <u>제7호</u>-----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 ----- ----- -----.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1.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u>검찰청</u> · <u>병무청</u> · <u>방위사업청</u> · <u>경찰청</u> ·소방청·국가유산청·농촌진흥청·산림청·질병관리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다. ----- ----- --- <u>공소청</u> · <u>병무청</u> · <u>방위사업청</u> · <u>중대범죄수사청</u> · <u>경찰청</u> ----- ----- -----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② (생략) 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략) 3. <u>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u> 4.·5. (생략) ④ (생략)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u>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u> 4.·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 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 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 가로 허가해야 한다.	제7조의6(공가)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u>검</u> <u>찰</u> ,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 될 때	2. ----- <u>공</u> <u>소청</u> ----- -----
3. ~ 13.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생략)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u>	2. <u>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록</u> 가. <u>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혐의자, 관련자 및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u> 나. <u>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의 경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및 공소장 등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u>

	<u>소 유지와 관련된 기록</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u>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u> 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 ----- ----- ---- <u>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조사·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7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6조의4(조사·수사 자료의 범위)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u> :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	2.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u> -----

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 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협 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u>법 제73조제3항</u>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이 <u>검찰총장·경찰청장, 그 밖 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u> 정하는 자료	----- ----- ----- ----- <u>법 제73조제4항</u>----- ----- ----- -- <u>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 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 기관 등의 장</u>-----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u>지방검찰청 검사장</u> 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 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 ----- <u>지방공소청장</u> ----- ----- ----- ----- <u>지방공소청장</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사보 2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2명(행정주사 2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정보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1명, 정보주사 또는 조사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illegible]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 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 다)를 요청하려는 <u>수사기관의</u> <u>장은</u>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 ----- ----- <u>검사 또는 수</u> <u>사기관의 장</u> ----- ----- -----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 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 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u>수</u> <u>사기관의 장</u> 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 ----- <u>검</u> <u>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 차) 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u>수사기관의 장</u> 은 법 제4조의6제 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검사의 검토의견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 차) ① ----- <u>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u> ----- ----- ----- -----

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할 때에 필요하면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
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긴급출국금지
를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수
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⑤ (생략)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
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
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
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
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
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청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검사 또는 수사기
관의 장-----
-----.

④ -----

----- 검
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
의 작성 및 관리) -----
-----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

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
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
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
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
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
금 상당액을 냈을 때에는 지방
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
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
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
국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이나 추징
금을 다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
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
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벌
금이나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
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다 내지 아
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
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
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
소청장-----

-----.

② -----

----- 지방공소청장-----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u>지방검찰청</u> 또는 <u>지청</u> 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 ----- ----- <u>지방공소청</u> 또는 <u>지방공소청 지청</u> ----- -----.
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u>검찰청</u> 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공소청</u> -----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①·② (생략)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신제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u>고등검찰청</u> 의 검사에게 허가의 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u>고등검찰청</u>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광역공소청</u> ----- ----- --. ④ ----- <u>광역공소청</u> ----- ----- -----.
제19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기 위하여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u> 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집행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	제19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① ----- ----- ----- ----- ---- <u>지방공소청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u> ----- ----- -----

범위·기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처리결과, 통지를 유예하려는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통지를 유예하려는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
-----.

② -----
--- 지방공소청장-----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협의회회의 구성 등에 관 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 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 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8조(지역협의회회의 구성 등에 관 한 조례의 기준)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 장 또는 검사</u> <u><신 설></u>	4. <u>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u> ----- <u>4의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 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 명하는 소속 공무원</u>
5. ~ 14. (생략)	5. ~ 1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감찰종료) ① ~ ③ (생략)	제7조(감찰종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 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u>검찰</u> <u>총장</u> 에게 고발하여 종료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 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u>검찰총장</u> 에게 수 사의뢰하여 종료한다.	④ ----- ----- ----- <u>중대</u> <u>범죄수사청장</u> ----- ----- ----- ----- <u>중대범죄수사청장</u>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 로 하 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 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u>검찰</u> 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 ----- ----- ----- ----- <u>수사기관</u>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 ② (생략)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u>검찰청</u> ·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 <u>경찰청</u> · <u>해양경찰청</u> · <u>행정안전부</u> · <u>국세청</u> · <u>관세청</u>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 <u>금융위원회</u> · <u>국가정보원</u> 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⑤ (생략)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공소청</u> <u>·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 <u>중대범죄수사청</u> · <u>경찰청</u> ----- ----- ----- ----- ----- ----.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자금 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 ----- ----- ----- -----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① <u>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u> 은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 ① <u>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지청장</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사 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 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 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u>검찰청</u> 에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 ----- ----- ----- ----- <u>공소청</u> ----- -----.
② <u>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u> 은 신원 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 정하여야 한다.	② <u>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u>검사가공판정</u> 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 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u>재판장 또는판사</u> 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 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 ----- <u>검사가 공판정</u> ----- ----- ----- <u>재판장 또는 판사</u> ----- ----- -----.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①----- -----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② (생략)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

1. (현행과 같음)

2. -----

----- 지
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
청-----

3. -----

----- 지
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
청-----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조금의 신청)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 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 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구조결정) ①심의회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

----- 지방공소청 -----

-----.

-----.

제11조(구조결정) ①-----

----- 대
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회의 관할) -----
----- 지
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
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

<u>청</u>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u>당해 지방검찰청</u>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u>청</u>----- -- <u>해당 지방공소청</u> ----- ----- ----- -----.
제16조(사무직원) ① (생략)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u>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u> 위원장의 추천으로 <u>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u> 임명한다. ③ ~ ⑤ (생략)	제16조(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u> ----- <u>해당 지방공소청장</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생략)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u>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u>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u>----- ----- -----.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①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u>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u>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①-- ----- ---- <u>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u>----- -----. ② (현행과 같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u>검찰총장</u>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① ----- ----- ----- <u>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u>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u> 및 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 ----- ----- <u>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조계나 학계 등	③ ----- -----

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협
이 풍부한 사람 중 검찰총장 또
는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또는 경
찰청장이 위촉한다.

⑤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
촉 권한을 각각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
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 검찰총장, 중
대범죄수사청장 -----
-----.

④ -----

----- 검찰총장, 중대범죄
수사청장 -----.

⑤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
장을 포함한다), 지방중대범죄
수사청장 -----.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

----- 검찰
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u>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u> 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 ----- ----- ----- ----- ----- ----- ----- ----- ----- -- <u>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u> ----- ---.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u>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u> ,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	② ----- ----- ----- ----- ----- ----- ----- ----- ----- ----- ----- <u>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u> ----- -----

장, 국립법무병원장,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
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
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
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형집
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
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
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
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
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처
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
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
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

③ -----

----- 소속된 공소
청-----.

④ -----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
공소청 지청장-----
-----.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1. ~ 5. (생략) ⑤ 법무부장관은 「상법」 제637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u>지방법원</u> <u>찰청</u> 또는 <u>지방법원찰청지청의 장</u>에게 위임한다. ⑥ (생략)	----- ----- ----- -----. 1. ~ 5. (현행과 같음) ⑤ ----- ----- ----- <u>지방법원</u> <u>소청장</u> 또는 <u>지방법원소청지청장</u> -----. ⑥ (현행과 같음)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 (생략)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u>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u> <u>· 7급 · 8급 · 9급</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u>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u>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u>대검찰청</u>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 ----- ----- ----- <u>공소청</u> ----- ----- ----- -----.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조에 따른 <u>대검찰청</u>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6. ----- <u>공소청</u>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특수 관인) ① (생 략)	제34조(특수 관인) ① (현행과 같 음)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재정경제부장 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국립 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 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 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u>검 찰기관</u> 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 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 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한다.	② ----- ----- ----- ----- ----- ----- ----- <u>공</u> <u>소청</u> ----- -----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u>지방</u> <u>검찰청</u> 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 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 다. 1. 해당 <u>지방검찰청</u> 소속 공무 원 2. 3. (생략)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 구성) ----- ----- ----- <u>지방</u> <u>공소청</u> ----- ----- ----- ----- --. 1. --- <u>지방공소청</u> ----- -- 2. 3. (현행과 같음)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u>각급 검찰청</u> 의 검사로 하 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공소청, 광역공소청</u> <u>또는 지방공소청</u> ----- -----.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 -----

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u>지방검찰청</u>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u>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u>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 ----- ----- <u>지</u> <u>방공소청</u>-----.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 ----- ----- <u>지방공소청(지방공</u> <u>소청 지청을 포함한다)</u> ----- ----- -----. ② (현행과 같음)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u>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u>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 -----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u> ----- ----- ----- -----.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회의(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u>총경 이상 경찰공무원</u>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회의 위원 각자가 1명씩 지명하는 <u>6명</u> 으로 한다.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회의 구성) ----- ----- ----- ----- ----- <u>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u> ----- ----- ----- <u>7명</u>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11. ~ 25. (생략)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 25. (현행과 같음)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한 <u>수사</u> 를 계속하는 경우	----- <u>수사</u> <u>나 검토를</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① (생략)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 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 182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또는 <u>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u> 체포·구속·구금 또는 유치(留 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 는 그 교도소·구치소 또는 <u>국 가경찰관서의 장</u> 에게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통지한다.	② ----- ----- ----- --- <u>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 치장</u> ----- ----- ----- ----- <u>경 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①· ② (생략)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 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구 치소 또는 <u>국가경찰관서의 유치 장</u> 에 체포·구속·구금 또는 유 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	③ ----- ----- ----- ----- <u>경찰서 등 수사기관 의 유치장</u> ----- -----

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 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④ ~ ⑦ (생 략)	-----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생략)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검찰청·사법경찰관서</u>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입건현황과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 없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②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사법경찰관서</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u>검찰청, 그 지청</u> 또는 군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 ----- --- <u>공소청</u> ----- ----- ----- ----- ----- ----- ----- ----- ----- ----- -----.

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	-----
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附記)한	-----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	-----
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	-----
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	-----
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12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 ----- <u>13명</u>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 -----.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u>경찰청 및 해양경찰청</u>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 ----- ----- <u>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u> ----- ----- ----- ----- ----- ----- ----- ----- -----			

2. (생략)

3. 대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④ (생략)

제13조(신입자의 인수)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
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
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
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
(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
상·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
(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
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
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경찰관
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
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법 제
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

2. (현행과 같음)

3. 공소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신입자의 인수) ①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

는 <u>검찰청</u> 등에 출석하는 경우 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 로 본다.	-- <u>공소청</u> ----- ----- -----.
---	---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 (생 략)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 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 할하는 <u>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u> <u>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u> 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 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u> <u>또는 지청의 검사</u> 에게 송부하 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 야 한다.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u> <u>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u> <u>속된 경우</u> ----- ----- ----- ----- <u>지방공소청</u> <u>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입법지원국	
연 락 처	(02) 2100 - 2236